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 년)	21:00 (밤)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우리어머니 Cu.	7월 13일(일) 11:40	교육관
사도들의 모후 Cu.	7월 13일(일) 12:00	식당
울뜨레야	7월 20일(일) 11:40	교육관
성체분배자회	7월 21일(월) 19:40	성체조배실

● 다음 주일(7/20) 청소 담당 : 17구역

● 알림

- 7월 16일(수) 11시 교육관에서 경로당 월레미사가 있습니다

● 신자 신앙교육 7월 특강

일 시	주 제	강 사
7/14(월)19:40	조용한 사람,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
7/28(월)19:40	천동의 사람, 야고보와 요한	

●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한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상영후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성찰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7월 19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교육관 강당
- 대상 : 원하는 신자 누구나

● 신입복사단 입단식

- 일시 : 7월 20일 10시30분 교중미사
- 유초등부 전체 참여
- 3시 유초등부미사는 없습니다.

● 목사발, 편육 판매

- 무더운 여름!! 시원한 목사발 판매합니다.
- 일시 : 7월 27일 교중미사후
- 장소 : 식당에서
- 목사발과 편육을 중장년부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하느님의 빛 아래, 햇빛과 바람도 우리의 자원입니다. 자연 에너지를 기억합시다.
- 가정생명환경분과 -

● 수지계산서

2025.06

수입		비용	
계정 과목	금 액	계정 과목	금 액
봉헌금	353,891,940	선교비	225,344,535
후원금	7,909,720	성무활동비	52,567,250
목적헌금	20,176,970	교육비	2,485,000
기부금	1,139,221	자선찬조비	9,347,210
부속기관수입	2,100,000	지정지원비	5,820,000
기타수입	34,561,255	행사비	17,798,600
운영수지차액	94,723,912	인건비	95,346,971
		회의비	1,488,400
		운영비	57,464,070
		세금과공과	3,604,852
		복리후생비	6,861,530
		기 타	36,374,600
합 계	514,503,018	합 계	514,503,018

● 우리들의 정성(7월 2일 ~ 7월 8일)

교무금	7,579,000원
주일헌금 현금	4,520,000원
주일헌금 하상앰	5,000원

• 감사헌금 서만심 6만원 현은순10만원 최윤순10만원
홍연실 6만원 정봉순 5만원 김원옥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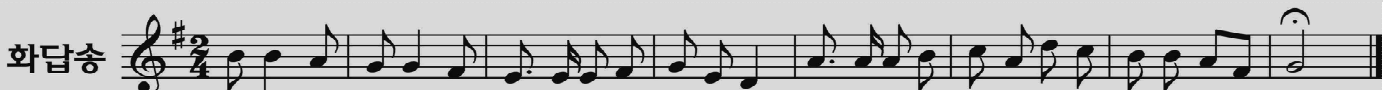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7/13	구민서	신종구 장희석	최웅조 정연희
7/20	황원선	김영균 임종윤	안상록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13	장인홍	옥윤필	도현만 하재민	최승일
7/20	조흥환	이운영	박승환 김영균	최영만

성가번호 ♪ 입당 : 62 ♪ 예물준비 : 212, 217 ♪ 영성체 : 175, 197 ♪ 파견 : 82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 희마음 에 생기를 돋우어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2 장 성 사

제 2 절 견진성사

제 66 조 (집전자)

1항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교회법 제882조 참조).

2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된다
(교회법 제863.866조.제883조 2호 참조).

3항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교회법 제883조 3호;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4조 참조).

제 67 조 (연 령)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교회법 제891조; 견진성사 예식서, 11.12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85항 참조).

제 68 조 (준 비)

사목자는 견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영세 후의 후속 교육과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도록 해야 한다(교회법 제889조 2항.제890조; 견진성사 예식서, 12항 참조).

제 69 조 (대부 대모)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교회법 제892.893조; 견진성사 예식서, 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86항 참조).

제 70 조 (견진 기록)

1항 견진집전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견진 사실을 지체없이 사목구의 견진대장에 기록한다(교회법 제895조; 견진성사 예식서, 14.15항 참조).

2항 견진자의 세례대장과 교적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도록 조치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제895조 참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